



규정

예결산자문위원회 운영 규정

문서번호	TWP-B219
제정일자	2017 .05. 31.
개정일자	2018. 02. 19.
개정번호	1
페이지	1/4


목 차

부칙

작성부서	경영지원실	제정일자	2017.05.31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승 인
직 책	과 장	기획예산처장	사무처장	교무학생처장		총 장
서 명						
일 자						

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B219	
		제정일자	2017 .05. 31.	
	<b>예결산자문위원회 운영 규정</b>	개정일자	2018. 02. 19.	
		개정번호	1	페이지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예산 편성 및 결산,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결산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
2. 결산에 관한 사항
3.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
4. 재정의 확충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, 교무학생처장, 사무처장, 산학입학처장, 경영지원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임명한다.<개정 2018.02.19.>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예산 및 회계 담당 직원 중에서 1인으로 한다.

**제4조(위원장)** 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
**제5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당연직위원은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며,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	규정		문서번호	TWP-B219
			제정일자	2017 .05. 31.
	예결산자문위원회 운영 규정	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	개정번호	1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